

평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2년 3월 27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2월 19일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3월 2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2002. 3.26 제9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2년 3월26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기획실장 권순철)

가. 제안이유

-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며 주차장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보완(안 제1조)
-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규정(안 제9조)
-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(안 제12조)
-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토지등에 대한 감면조문 개정(안 제15조의1·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지방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관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 그간 운영하여 왔으나

- 상위법령인 지방세법, 전염병예방법,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,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법령의 형식·절차·자구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